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3~47

제출일자	2003. 10. 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□ 개정이유

○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승인에 따른 증원으로 군의 정원을 조정 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(제2조 제2호)

· 집행기관의 정원 : 592명⇒ 593명(증 5급 1)

·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

- 총　　계 : 606명 ⇒ 607명(증1)

□ 개정근거

○ 시군 기구·정원 승인(경상남도 행정12200-12028(2003.9.23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7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593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**606명**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**592명**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	**제2조** 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**607명**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**593명**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